

환경친화축산농장 소개



정의

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

근거 「가축분뇨법」 제9조, 「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4호 및 「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(고시)」



대상

「가축분뇨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증 소(젖소 포함)·돼지·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



지정기준

심사 결과 만점(합계 200점)의 80% 이상(160점 이상, 가점포함) 획득 시

* 다만, 분야별 점수가 60% 미만인 경우 또는 결격(★표로 표시된 항목)이 있을 시 제외



지정절차

신청(농가) → 접수(농식품부) → 심사위원 구성 및 신청서류검토(관리원) → 현장심사 → 지정심의위원회 → 지정(농식품부)

* 신청서류 검토: 신청 자격, 신청 서류 완비 등 확인 후 농식품부 보고

환경친화축산농장 사업 절차도

1



지정신청

신청서 제출

* 축산농가 → 농식품부



2



서류검토

서류검토

* 농식품부(축산환경관리원)



3



신청농장 현장심사

농식품부 및 전문가 합동 심사

*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심사 실시(점수화)



4



지정심의위원회

농식품부 및 전문가 합동회의 개최

*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



5



지정 또는 보완

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→ 지정서 교부(신청농가)

* 농식품부 → 종합심사 결과, 적합한 경우



6



지원 및 지도·교육

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
(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) 지원한도 20% 추가
농장주 대상 교육



7



사후관리

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·점검 실시
(매년 3분기)

* 지정기준 등 미이행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